

[별표 3]

평가 가·감점 부여기준(제21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가점기준

- ① 자치회장 : 종합성적에 2.0점 범위 이내
- ② 총무, 분임장 등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 종합성적에 1.0점 범위 이내
- ③ 연구발표자 : 종합성적에 1.0점 범위 이내

2. 감점기준

구분	감 점 해 당 사 항	단위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미만	2~4주	5~9주	10주 이상
학 습 생 활	사후승인 결석	1일	2.0	1.5	1.0	0.5
	사후승인 결강(이석)·조퇴·지참·외출	1시간	0.4	0.3	0.25	0.2
	승인받고 결석	1일	0.5	0.4	0.3	0.1
	승인받고 결강(이석)·조퇴·지참·외출	1시간	0.05	0.04	0.03	0.01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회	2.0	2.0	2.0	2.0
	학습태도 불량	1회	0.5	0.5	0.3	0.3
	시험태도 불량	1회	2.0	2.0	1.0	1.0
	공무원 품위손상 및 교육질서 문란	1회	2.0	2.0	1.5	1.0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	1회	0.5	0.5	0.3	0.3
생 활 관 생 활	물품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1회	0.3	0.2	0.1	0.1
	인원 파악 시 무단불참	1회	0.3	0.2	0.1	0.1
	무단외출	1회	1.2	1.0	0.8	0.5
	무단외박	1회	2.0	1.5	1.2	1.0
	귀원시간 지참	1회	0.8	0.8	0.5	0.3
	실내음주, 질서문란 등	1회	3.0	3.0	2.5	2.0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	1회	0.5	0.5	0.3	0.3

※ 근태 감점이 3점 이상이면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 생활관 생활 중 무단 외출 및 귀원 시간 지참의 총 감점 점수는 무단 외박의 감점 점수 이내로 함

※ 제14조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 처분